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규정

제 정: 2006. 11. 23 1차개정: 2008. 3. 25. 2차개정: 2012. 3. 26. 3차개정: 2013. 12. 20.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종목의 인수업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원칙) 인수업무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및 주무부처 고시 등 관계법령(업무방법서를 포함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3 조(적용대상종목) 제1조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종목은 다음 각호의 보험종목을 말한다.
 - 1.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(융자등)
 - 2.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(주식등)
 - 3.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(수익권등)

제 4 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규정에서 "지급보증거래"라 함은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보증하는 거래를 말한다.
 - 1. 정부(중앙은행 포함)
 - 2. 금융기관
 - 3. 해당국의 관계법령 등에 의해 대외지급 보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, 공기업 등
- ② 이 규정에서 "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"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본·지점을 말한다.
 - 1. 순자산이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액 이상으로서 주사무소를 국별신용등급이 2 등급 이상인 국가에 두고 있는 금융기관
 - 2. 국별신용등급이 4등급 이상인 국가에 주사무소를 두고 "The Banker"지가 정한 500대 은행 또는 "The Banker"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규모가 "The Banker"지 500대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
- ③ 이 규정에서 "해외자원"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자원으로 석유·석탄·우라늄광·동광·철광·아연광·알루미늄광·니켈광·몰리브 덴광·희토류광·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.

제 5 조(기술위원회 설치)

- ①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.
 - 1. 탐사사업 인수시 광구의 성공가능성 등의 기술적 위험 등과 관련된 사항
 - 2. 탐사사업 보상시 손실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
 - 3. 기타 투자위험보증사업 업무수행 관련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.
- 제 6 조(적용대상거래)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적용대상거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거래를 말한다.
 - 1.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,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경우
 - 2.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·사채·대출채 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투자한 경우
 - 가. 차주앞 대출채권 취득
 - 나. 차주의 사채 취득
 - 3. 해외현지법인 및 외국인과의 합작회사에 대한 출자
 - 4. 석유·가스·일반광물의 탐사·개발·생산·정제·운송·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 취득
 - 5.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·사채·대출채 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피보험투자 상대방에 대한 출 자 및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
 - 6.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·사채·대출채 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수익거래계약상대방의 수익권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
 - 7.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 제7호에 따라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의 승인을 받아 수익거래계약상대방의 수익권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
 - 8. 그 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 제7호에 따라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이 인정한 경우

제 7 조(보험계약의 체결)

-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또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해외자원개발보험증권을 발급한다.
- ② 청약시 징구서류, 심사사항, 보험약정서류, 보험증권 기재사항, 보험료, 보험계약관

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워개발펀드보험 인수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8 조(특약의 활용)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다양한 투자형태 및 계약구조를 감안하여 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특약 체결시에는 해당 인수담당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금융계약서 등의 승낙조건, 보험료 정산방법, 세부 행정절차 등 약관 내용을 보충적으로 규율하는 개별특약은 인수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- 제 9 조(원화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)
 - ① 외화로 보험금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, 이 규정, 인수요령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공사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.
- 제 10 조(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)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보험가액, 인수가액, 보험금 액 및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.
 - 1. 보험가액, 인수가액,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가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가. 보험가액, 인수가액 및 보험금액: 1.000원 미만 단수절사
 - 나. 보험료(환급보험료 및 위약금을 포함함) : 10원미만 단수절사
 - 2. 보험가액,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(환급보험료를 포함함)가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통화의 소숫점이하를 절사한다.
- 제 11 조(보험료 및 이익금 연체시 위약금 수납) 보험료 연체시 연 17%의 이율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연체금액 및 연체일수에 적용하여 받는다.
- 제 12 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"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요령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(제정)

이 규정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- ①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"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요강"은 폐지한다.

부 칙 (2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